# KOSHA GUIDE

C - 5 - 2016

- (4) 혈압계, 간이혈당계 등 간이 건강검진 장비와 비상약품을 현장에 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(5) 정기적으로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건강 이상자는 위험작업에 투입을 금지한다.

# 7. 비상시 긴급 안전조치

### 7.1 비상시 피난계획 및 훈련 실시

- (1) 화재·붕괴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여 연락체계, 대피 경로 및 유도자 배치, 대피 장소 등이 포함된 비상시 피난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(가) 비상시에 대피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한다.
  - (나) 정전시를 대비하여 비상조명등, 유도등, 손전등을 설치한다.
  - (다)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한다.
- (2) 비상시를 대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.
- (3) 응급조치시설, 구난장비 등을 비치하고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# 7.2 야간작업 시 고려할 사항

작업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야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재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.

### 8. 작업의 중지

- (1)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.
  - (가) 작업에 필요한 가시설 및 안전시설물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은 경우
  - (나) 정전이 예고된 경우의 야간작업
  - (다) 강풍, 강우, 강설, 혹한 시 옥외작업